##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2525

발의연월일 : 2022. 10. 19.

발 의 자: 오지연 의원

### 1. 제안 이유

하남시가 설치·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관례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# 5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0. 20. ~ 10. 25.
- 나. 의견 내용
  - 안 제2조(정의) 입장료 정의, 안 제7조(위탁운영) 조항 삭제 및 경미한 문구 수정사항 반영
- 6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##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물놀이장"이란 하남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(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,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- 2. "이용자"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3. "안전요원"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물놀이장 관리)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, 수질은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·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-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.
- 제4조(물놀이장 운영)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,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.

-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,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.
- 제5조(물놀이장 이용)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이용 등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  - 2.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
  - 3. 노약자,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
  - 4.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
  - 5.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
 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7조(보험 가입)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(제3조 관련)

- 1.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.
- 2.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과 운영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3.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4.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에는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.
- 5. 물놀이장은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.
- 6. 사고 발생 시 경미한 경우 안전요원은 먼저 조치한 후 보고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고, 중상인 경우 사무실과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
- 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 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- 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 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
- 2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
- 3.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
- 4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□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
제89조의3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·관리 기준)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.

#### 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9의2]

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(제89조의3 관련)

#### 1. 수질 기준

가.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

검사항목	수질기준
1) 수소이온농도	5.8 ~ 8.6
2) 탁도	4NTU 이하
3) 대장균	200(개체수/100mL) 미만
4) 유리잔류염소(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$0.4 \sim 4.0 \text{mg/L}$

#### 나. 검사 방법 및 주기

- 1)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 질검사기관 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,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.
- 2)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한다.

#### 2. 관리 기준

- 가.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,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, 제거하여야 한다.
- 나.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.
  - 1) 저류조(貯溜槽)의 주 1회 이상 청소
  - 2)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
  - 3)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
- 다.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·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라.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연락처,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, 이용자 주의사항(음용 금지,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)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마.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·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,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바.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, 소독 또는 청소·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, 초과원인,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